
INDIVIDUAL RESPONSIBILITY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MINAMI JIRO

- RE control of travel to China by undesirable elements, 21 August 1937
 - RE regulation of departures for Hankou, 10 March 1939
 - RE situation of issuance of certificates on travel in occupied territories of the Japanese army in China, 9 August 1939
 - RE temporary measures of Japanese nationals traveling to China, 7 May 1940
 - Hata Ikuhiko, Comfort Women and Sex in War Field, 1999-.
-

ITAGAKISEISHIRO

- Comfort station at Bangjin
- US Office of War Information, Japanese POW Information Report No. 49 (1944)

TOJO HIDEKI

- ~~RE Control of travel to China (13 Jan. 1939)~~
 - Kinbara Setsuzo, Summary of the Work Journal of War Ministry
 - RE Travelers to South Pacific Area (16 March 1942)
 - RE Treatment of Travelers to Chinese Coastal Area Considered as Impossible to Obtain Certificates of Reasons for the Travel to China and other Documents (23 August 1940)
 - RE various statistical report on temporary arrangement for nationals to travel to China (11 June 1941)
-

HIROHITO

- Article 9, item v, [Japanese] Official Gazette No. 4565 (31 March 1942)
 - Memoir of Inoue Masanori
 - Diary of Takamatsunomia
-

They are responsible for sexual slavery

- Comfort Station Policy
 - Forced Recruitment
 - Forcible Transfer
 - Rape
 - Torture, Mutilation
 - Enslavement
 - Persecution
 - Murder, Extermination
 - Other Inhumane Acts
-

Grounds of Responsibility

- Plan, Instigation, Order, Commission, Aid, Abet
 - Command Responsibility
-

Crimes against 'Comfort ~~Women~~' – Systematic Rape and Enslavement

- War Crimes

- Crimes against Humanity

No Justice

- Allied Failure to Prosecute Hirohito et.al
 - Racial Discrimination
 - Ignorance, Neglect of Gender Violence
 - Silencing Victims
 - No Settlement of the Colonial Past
-

Our Call for Justice

- Gender Justice
 - Victims' Justice
 - Not revenge
 - Call for Peace, Rehabilitation, Reconciliation
-

1. 개인책임

저는 남북 공동검사단의 조시현입니다. *Your Honor* *2/2 262, 313 등*
저는 지금까지 검사단에 의해 제출된 증거와 증언에 근거하여 일본 *가장 강력한*
군성노예에 관한 관련 피고인들의 개인책임을 묻겠습니다. *법리와 가혹한*
상처와 관련한
증거를 증언.

2. 남북 공동검사단은 다음의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3. 먼저 오카무라 야스지 *이미 위안소에서 법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였
함은 분명하며 증언에 의거
한 항구까지 승모.
입니다

오카무라 야스지는 무엇보다 1932년 상해 파견군 참모부장
(Vice-Chief of Staff, Shanghai Expeditionary Force), 1938년 6월
부터 1940년 3월까지 중지나지역 제 11군 사령관(11th Army in the
Central China), 1944년 11월 부터 종전까지 중국파견군 사령관
오카무라는 현재 문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의 위안소 설립에
관여하였습니다.

4. 우메즈 요시지로 (梅津美治郎): *위안소에서 복박한 것임이.*
1939년 9월부터 1944년 7월까지
관동군사령관(Commander of Kwantung Army)이었으며 그후 육군
대장이었습니다.

만주와 소련 접경지역의 위안소는 그의 예하 부대(army units under
his control)를 위해서 존재하였습니다

5. 안도 리키치 (1884- 1946)에 관한 증거는 이미 강제연행과 관련
하여 제출되었습니다

6. 마츠야마 유조는 미얀마방면군 (Burmese Area Army) 51 사단

(division)의 사령관으로서
박영심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조선인 위안부에 대해 자행된 범죄
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 버마의 위안부들에 대한 신문 보도가 있었음은 주목됩
니다

7. 미나미 지로 (1874-1955): 1929년 8월 조선군 사령관, 1931년
4월 육군대신, 1934년 12월 관동군 사령관, 1936년 8월부터
1942년 5월까지 조선 총독.

그는 조선에서 위안부의 강제연행과 이송에 대한 정책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극동 국제 군사법정(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에서 만주와 중국 침략한 것에 대해 유죄판
결을 받았다.

그러나 조선 총독으로서의 그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도
물어지지 않았습니다.

8. 이타가키 세이시로 (1885-1948)는 특히 1941년 7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조선에서 조선군(Chosen Army) 사령관
이었습니다.

9. 도조 히데키(1884-1948): 1940년 7월부터 육군대신, 1941년 9
월부터 1944년 7월까지, 수상, 육군대신, 내무대신 겸임.

그는 전쟁을 총괄적으로 지휘하였으며 위안부에 관한 정책을
입안 수행한 책임자였습니다

10. 히로히토(1901-1989): 1926년부터 1989년까지 일본 천황
히로히토에 증거로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서 그가 이
러한 범죄행위의 자행을 알고있었음이 틀림없음을 입증
합니다

강요하여 진술한 내용을 변역하여 내민가지
비밀화했습니다
다들 알고있어요.

11. 위의 피고인들은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아시아·태평양의 여러지역에 이른바 군'위안소' 정책을 입안, 설치하고 수십만의 조선여성들을 이른바 '위안부'로 강제로 동원하고 송출하였으며

강간과 다른 형태의 성폭력, 상해, 신체절단, 고문, 감금, 살해와 기타 비인간적이고 잔학한 대우 등의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12. 책임의 근거

이들은 성노예범죄행위를 계획, 고무·선동하고 명령, 방조, 교사

이들은 일본군과 정부의 고위 당국자(high authorities)로서

이러한 행위의 자행(commission)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또는 이들은 이러한 행위의 자행을 막았어야 함에도 막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13. 이러한 위안부들에 대한 범죄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강간이자 노예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오늘 오전에 국제검사인 패트리샤가 주장한바와 같이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14. No Justice

72.7.7 - 민간인, 특히 아동, 여성에 대한 공격.
반인도적 - 식민지, 노예, 박해, 학살

연합국들은 히로히토 등의 위안부에 대한 범죄를 잘 알고 있었다. 이를 기소하여 처벌(prosecute and punish)할 수 있었음에 하지 않았습니니다.

또한 일본은 이러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한 명도 처벌한 바 없습니다.

이러한 연합국의 정책과 일본정부의 처벌의무 불이행
(non-fulfilment)은 인종차별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무지이며 이를 간과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자들이 처벌되지 않았던 이유는 피해자가 침묵
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의 각국가들은 이들의 일본의 강점과 식민지
의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던 것도 주요한 이유입니다.

15. Our Call for Justice (하루)

I Thank you, your honor

제가 하소연 정답

우리 검사단은 이 법정외의 한계, 검사들이 기소하는데 있어서의 한계에 대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일본군 성노예 범죄는 약 60여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미 사망하였고, 생존하신 분들도 병들고, 노령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그들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증거도 파기되고 없어졌습니다.

우리 검사들은 일본군 성노예 범죄와 관련된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정부나 개인에게 강제로 그 문서를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었고, 참고인을 강제로 조사할 권한도 없습니다.

(또한 검사들은 소수의 인력과 짧은 조사 기간으로 인하여 물리적인 제약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이 법정에서 실제 재판할 때와 같은 정도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러한 점이 판결에 있어서도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b